

## 보도자료

2011년 3월 21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의안조정팀	김동철팀장(1670)	나.다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영미과장(2430)
[보고안건] 가.나. 뉴미디어정책과	손승현과장(2450)	다. 국제기구담당관	전영만과장(1730)

# 2011년 제17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 [의결안건]

#### 가. 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

- '09. 7월 서면결의 제도 시행 이후, '10. 1월 대상 안건을 1차 확대(11개) 하였으나, 여전히 토의가 불필요한 안건이 일부 상정됨에 따라 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아래 3개 사항을 서면결의 대상에 추가하기로 의결함
  - 위원회 규칙·고시 제·개정안 중 보고안건으로 대면회의 상정 후 입법절차를 진행한 결과,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의결안건
  - 상위 법령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고시로 하향입법하거나, 신청 절차서식 등 단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
  - 국제표준 변경내용을 그대로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무선설비 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 나. 방송편성책임자 공표·신고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편성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책임자가 아닌 자를 공표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함

- 최초위반여부,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사후조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편성책임자 변경 지연신고 관련>

- 부산문화방송(주)과 충주문화방송(주)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편성책임자 공표 의무 위반>

- 한국방송공사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재)CBS와 (재)불교방송은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재)평화방송, (재)극동방송, (재)원음방송이 신고한 편성책임자와 다른 지역의 편성책임자를 공표하는 행위는 지역의 편성책임자도 실질적으로 편성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행정 지도

다. 방송 운용시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방송운용 허용시간을 초과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하여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의결함

※ 위원회가 승인한 방송 운용 시간을 초과해 운용하고, 사후 변경 승인 신청 기한(3일) 내 미신청(위원회 지적 후 승인 신청)

<KBS 초과 편성 내용 >

프로그램명	방송일자	비고
성탄특집 유희열의 스케치북	'10.12.25(토)	녹화방송
2010 KBS 연예대상	'10.12.26(일)	생방송
송년특집 김승우의 승승장구	'10.12.29(수)	녹화방송
2010 KBS 연기대상	'11.1.1(토)	생방송

## [보고안건]

### 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 (첨부1 참조)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전담반」에서 논의한 사항 및 방송업계 의견을 보고함
-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KBS2 또는 전체 지상파>하는 방안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 마련 추진 ▲'재정' 제도 도입 등 분쟁해결 절차 보완 방안 등

### 나.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첨부2 참조)

- 「'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한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OBS의 서울지역 역외 재송신을 추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미승인 SO(14개사)의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 '10. 2월, 위원회는 서울지역 13개 SO에게 OBS 역외재송신을 승인하면서 나머지 SO(14개)는 시장상황을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

### 다.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 후보도시 (첨부3 참조)

- '10년 ITU 전권회의(멕시코)에서 '14년 ITU 전권회의(이하 PP-14)의 한국 유치가 확정된 바, ITU 사무총국의 실사를 받아 개최도시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개최 후보도시 선정 추진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 우리나라가 선정한 3개 후보도시에 대해 ITU의 실사와 이사회 결정 및 회원국 동의를 거쳐 개최도시 확정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

## < 주요내용 >

### 가.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관련

#### □ 전담반 논의사항

- ▶ <A안> 의무재송신 범위를 '일부(KBS2)' 확대
- ▶ <B안> 의무재송신 범위를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한시적 확대

#### ① <A안> 의무재송신 범위를 '일부(KBS2)' 확대하는 방안

- KBS는 자본금(3천억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방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이며, 채널별로 회계·예산 분리없이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국민들이 용이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의무재송신함

※ KBS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및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의무 부담(방송법 제43조, 제44조)

- 현행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과 같이 **KBS2** 채널도 방송법(제7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② <B안> 의무재송신 범위를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방안

- 지상파방송은 공공재 성격 및 전파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제한적으로 허가받아 운영되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전체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함

- 다만, 일정기간(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일몰제를 적용하며, 일몰 후 의무재송신 제도를 재검토함

※ 일몰제 사유 :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일정, 대가 정산기준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 민영방송까지 의무재송신을 무기한 적용 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등을 종합 고려

- 현행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과 달리 추가 의무재송신 채널(KBS2, MBC, 지역민방)은 방송법 제7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을 인정

※ KBS2, MBC, 지역민방은 광고운영을 통한 수익 구조를 가진다는 공통점을 고려

#### □ 방송업계 의견

- (지상파) 방송물의 저작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에 해당하며, 의무재송신 확대로 저작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법 및 헌법을 침해함
  - 헌법상 국민의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해 현행 방송법에서 최소한으로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여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송신 소송 판결 이후 사법적 해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검토를 요망
- (SO-위성·IPTV)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전파자원의 공적 의무 및 국민의 불 권리 등 보편적서비스 성격을 감안, '공영방송' 또는 '전체 지상파'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댓가를 전제로 한 재송신 시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 그 외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이 바람직하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에 대한 자율성 보장 조치가 필요함

#### 나.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 관련

##### □ 전담반 논의사항

- ▶ 지상파방송 재송신 시 사업자간 적정한 대가 정산 기준 마련을 추진
- ▶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11년말)후 방통위가 고시

- 방송법에 따라 저작권리가 제한되는 의무재송신이 아닌 경우의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을 마련하여 대가 규모의 사전 예측 및 분쟁 발생 최소화 목적
  - 재송신 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 사항을 우선 적용하되, 방송사업자의 규모, 방송콘텐츠에 대한 이용 가치, 재송신으로 인한 비용 및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정립

- 방송사업자간 재송신 협상 시 모범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분쟁발생 시 위원회의 조정·중재 과정에서 산식으로 적용

- 방송법령에 기준 마련 근거를 두며, 정산 절차기준 관련 전문가 연구 수행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기준(안) 마련 후 방통위가 고시

※ 방통위, 방송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대가 정산기준 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

#### □ 방송업계 의견

- (지상파) 방송물의 저작권 대가를 규제기관이 산정하는 것은 방송산업 시장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탈규제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조치이므로 규제기관이 대가 정산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길 사항
- (SO·위성·IPTV) 재송신 대가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기준이 필요하며, 지상파의 저작권 측면만을 고려한 대가 지급 방식이 아닌 재송신으로 인한 방송사업자간 수익 및 재송신 비용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함

#### 다. 「분쟁해결 절차 보완」 관련

##### □ 전담반 논의사항

- ▶ 향후 방송통신 통합법제 마련 시, 방송분쟁에 '재정' 제도 도입
- ▶ 현행 방송분쟁 '조정' 제도의 불응 절차 폐지 및 중대한 분쟁 발생시 '긴급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재정 제도 도입) 방송분야의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상 '재정' 제도를 방송분야에 확대 적용

-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재정 절차를 개시하여 방통위가 직권으로 재정 결정을 내리고, 재정에 대해 당사자가 일정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 (조정 절차 개선) 현행 '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방송분쟁 시 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에 대한 상대방의 불응 절차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방송법시행규칙 제15조) 정비 추진

※ 현행 '조정' 제도는 조정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음

- (긴급조정 제도 도입) 재송신 관련 대규모 분쟁 발생으로 국민의 시청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의 중대 사안 발생 시, 방통위가 '긴급조정'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중대한 사안'의 기준은 분쟁의 규모가 크거나(예: 전체 지상파 vs 전체 케이블 사업자간의 분쟁 등) 내용이 특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적용

#### □ 방송업계 의견

- (지상파) 재정 제도는 일본에서도 SO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지목되어 철폐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분쟁 절차 마련은 불필요
- (위성·IPTV)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시청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분쟁해결 절차 보완이 필요하며, 중대한 분쟁 발생 시의 '긴급조정' 요건을 전체 유료방송매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

#### 라. 「기타 정책·제도적 사항」 관련

#### □ 전담반 논의사항

#### ▶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 제도 폐지

- 현행 방송법은 일반 위성방송사업자(Skylife)가 의무재송신 대상 이외의 지상파방송(KBS2, MBC, 지역민방)을 지상파방송의 허가받은 권역내·외로 재송신 시 모두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제78조제4항)

- SO·IPTV의 경우,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 규정이 없으며, 지상파 방송을 역외재송신 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

※ Skylife는 KBS2('04. 9월), MBC·지역민방('05. 2월) 등 지상파방송에 대해 역내 재송신 승인을 얻어 재송신 중

-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구현을 위해 Skylife가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시에만 승인을 받도록 절차 개선 필요

※ Skylife의 지상파 역내재송신 승인 폐지 관련 의원입법(강승규) 발의('10.11월)

□ 방송업계 의견

- (위성·IPTV) 위성방송에 대한 역내재송신 승인제를 폐지하여 유료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 형평성 확보 필요

< 향후 계획 >

- 제도개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진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의결 안건 상정 (상반기)

<첨부2>

##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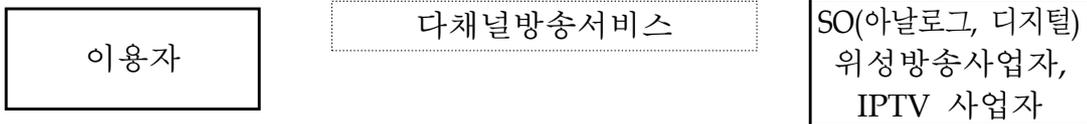
< 주요내용 >

가. 방송플랫폼의 가입자 시장

(1) 시장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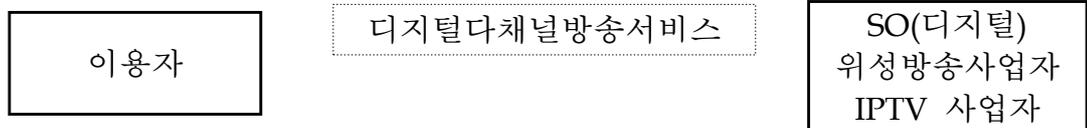
A-1) 유료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

-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에서 아날로그 종합유선방송서비스의 시장지배력 정도를 확인



A-2) 디지털 유료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

- 디지털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존재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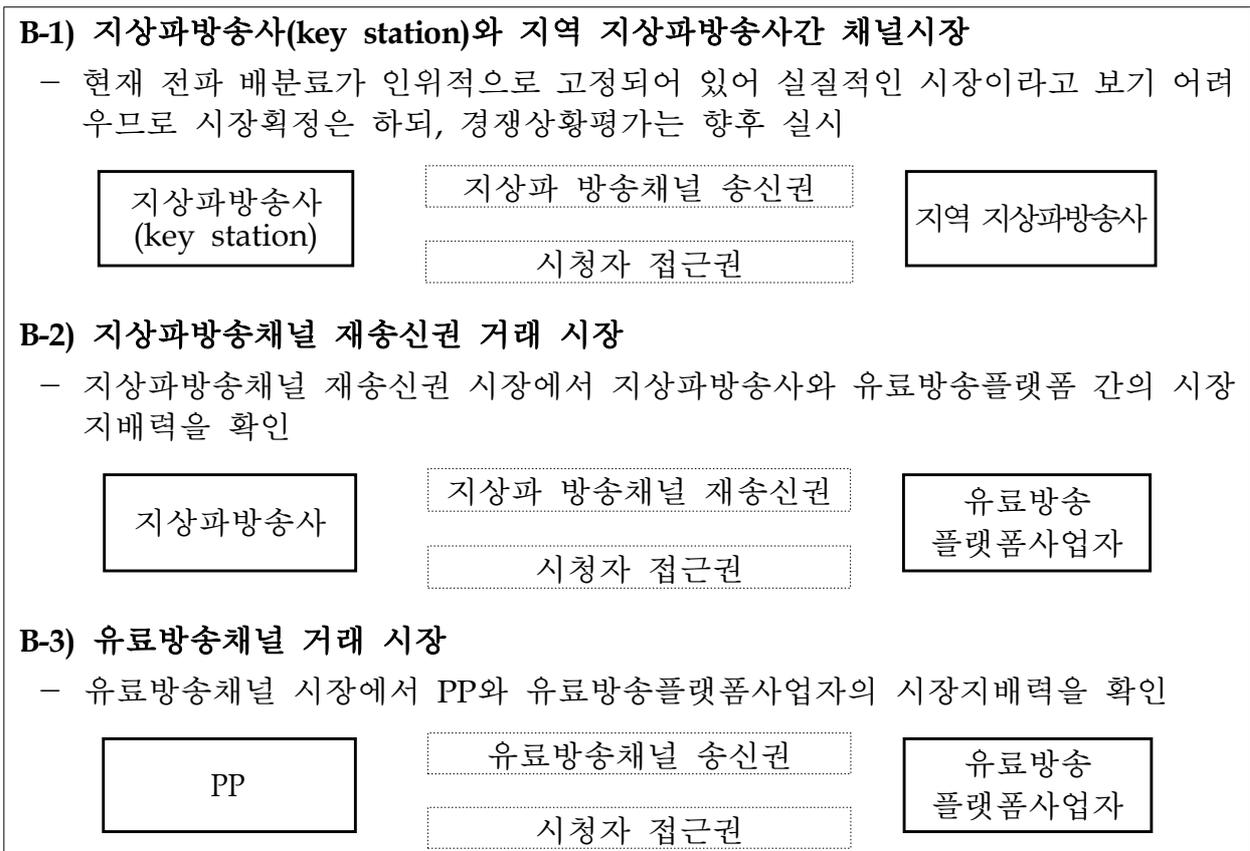
(2) 평가 결과

- OBS의 콘텐츠 경쟁력이 PP수준인 경우,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08년 부터 OBS를 재송신해 온 서울지역 13개 SO의 가입자 변화를 살펴본 결과, OBS 재송신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 OBS를 재송신하는 SO와 재송신하지 않는 SO가 공존하는 서울지역 6개 권역에서 OBS를 재송신하는 SO의 가입자 수 변화는 연간 1% 미만인 것으로 조사
- OBS의 콘텐츠 경쟁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OBS 재송신 여부에 따른 유료방송플랫폼간 가입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위성·IPTV 등 OBS를 재송신하지 못하는 플랫폼은 가입자 시장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들의 OBS 선호도가 높을수록 더욱 불리

- ▶ OBS의 콘텐츠 경쟁력에 따라 '유료방송플랫폼의 가입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OBS가 일정수준 이상의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 시, 플랫폼사업자간 가입자의 차이가 발생

## 나. 방송채널 시장

### (1) 시장 획정



### (2) 평가 결과

- OBS가 PP들과 경쟁하는 수준의 콘텐츠 확보 시, 유료방송채널 시장에 진입하는 영향이 있으며, 유료방송채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PP는 채널이 배제되거나 번호 배정에서 입지가 불리(B-3 시장)
- OBS가 지상파방송 3사 수준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 시, 현재의 지상파 방송 3사와 같이 독점적 재송신 시장을 형성하여 OBS를 송신하지 않는 유료방송플랫폼은 재송신 시장에서 불리(B-2 시장)

- 기존 지상파방송사는 방송채널 시장에서 별도의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취약 PP들은 채널 배정, 수신료 배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생 가능

▶ OBS의 콘텐츠 경쟁력에 따라 '지상파방송채널 재송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지상파방송 3사 수준의 콘텐츠 경쟁력 보유 시 독점적 재송신 시장을 형성

## 다. 방송프로그램 시장

### (1) 시장 획정

#### C-1) 지상파방송용 방송프로그램 시장

- 지상파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수요측면에서 시장지배력 확인
- 외주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공급측면에서 시장지배력 확인

지상파방송사  
(key station)

프로그램방영권/저작권

자체제작  
외주제작사

#### C-2) 유료방송채널용 방송프로그램 시장

- 현재 시장 지배력 이슈는 없으나, 향후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시장획정

PP 및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프로그램방영권/저작권

자체제작  
외주제작사

#### C-2-1) 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 시장

- 지상파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공급 측면에서 시장지배력 확인

PP 및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프로그램방영권

지상파방송사

### (2)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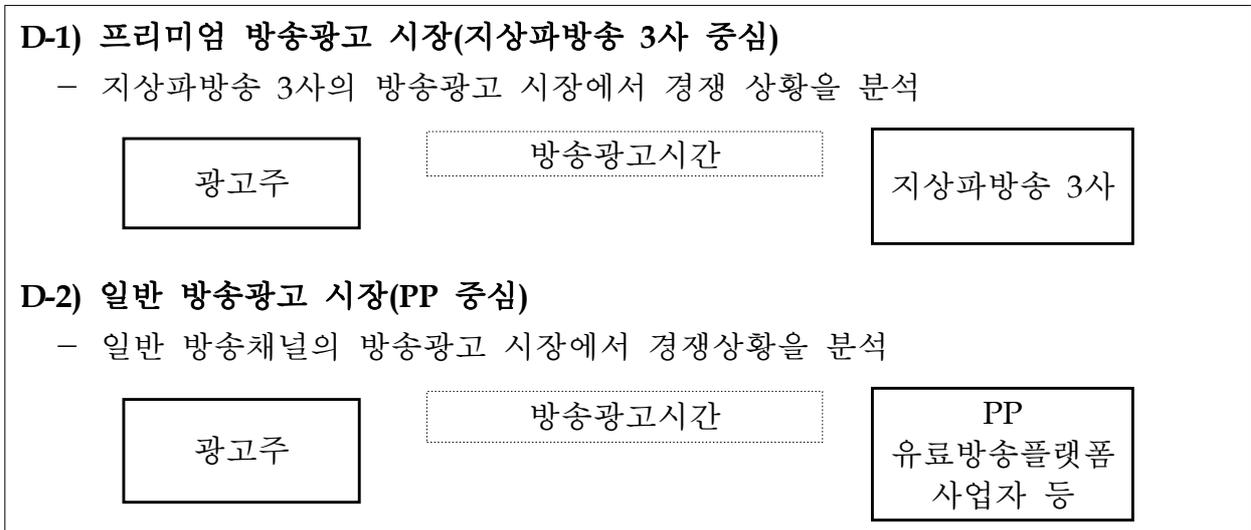
- OBS가 PP수준의 콘텐츠 경쟁력에 머물 경우, 방송프로그램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C-2 시장)
- OBS가 지상파방송 3사 수준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 수요를 증가시킬 경우, 프로그램 제작사 및 요소시장 주체(극작가, 배우 등)의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C-1 시장)

- OBS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09년 기준으로 비교 시, 다른 지역민방의 평균 제작비(약 27억원) 보다 약 6.5배(약 176억원) 높은 수준

▶ OBS의 콘텐츠 경쟁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OBS가 프로그램 제작 수요를 증가시킬 경우 제작사 및 요소시장 주체(극작가, 배우 등)의 협상력이 증가

## 라. 방송광고 시장

### (1) 시장 획정



### (2) 평가 결과

- 현재의 OBS 콘텐츠 경쟁력은 지상파방송 3사와 경쟁할 수준이 아니므로, OBS는 '일반 방송광고 시장(PP중심)'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D-2 시장)
- '10. 11월 현재, OBS의 SA급 방송광고 단가는 115.5만원인데 비해 지상파방송 3사의 방송광고 단가는 1,000만원 이상
- ※ OBS의 SA급 광고 단가는 지상파방송 3사의 C급 광고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지상파방송 3사의 C급 광고 비중은 미미한 상황(5% 미만)
- PP 방송광고 단가는 가장 비싼 스포츠채널의 SSA급이 150만원 수준
- OBS의 '09년 연평균 시청률은 인기PP 채널보다 낮은 0.11%인 반면 지상파방송 3사는 5% 내외

※ '09년도 주요 MPP 가구시청률(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PP채널 중 MBC드라마넷의 시청률이 가장 높았으나, 1%에 미달(0.92%)

○ 단기적으로는 OBS가 서울지역으로 역외재송신 되더라도 일부 PP와 광고판매 경쟁을 하여 지상파방송 3사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지상파방송 3사로부터 전파료 배분이나 연계판매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민방에 대해서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대체로 경쟁력이 낮은 PP채널들의 광고를 잠식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OBS의 콘텐츠 경쟁력이 지상파방송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경우, 지상파방송 3사의 광고 및 그에 따른 지역민방의 광고(전파료 배분, 연계판매)를 간접적으로 잠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이 경우에도 PP 광고시장에 대한 잠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27개 SO)에 대한 광고주 설문조사 결과, OBS에 대한 광고지출은 현재 약 163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증가될 전망

※ 지상파방송 200대 광고주 중 52개사 대상 설문 : 광고주별 광고지출 규모(변화)를 합산하여 영향을 추정하며, '10년 OBS 광고수입 253억원 기준 시 역외재송신 확대에 연간 약 261억원의 광고수입이 증가하여 총 514억원 수준에 도달

- OBS의 기존 광고주들은 광고 지출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 기존 광고주 17개사 중 1개사만 광고를 증가시키고 나머지 16개사는 현행 유지 응답

- 현재 OBS에 광고를 하지않는 광고주는 OBS에 광고지출 할 것이나, 신규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에 대한 광고지출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OBS광고를 구매할 것으로 조사

※ OBS 광고를 하지 않던 35개사 중 16개사가 타사 광고를 줄여 OBS 광고를 할 것으로 응답

- PP광고만 감축시켜 OBS 광고로 전환 가정시, PP전체 광고수익('09년 7,548억원) 중 최대 3.5%(261억원) 수준의 잠식이 가능하나, 실제 영향은 그보다 작을 것

- 지상파광고만 감축시켜 OBS 광고로 전환 가정시, 지상파전체 광고수익('10년 21,872억원) 중 최대 1.2%(261억원) 수준의 잠식이 가능

- ▶ 현재의 OBS 콘텐츠 경쟁력을 고려 시, 역외재송신 초기에는 ‘일반 방송광고 시장(PP중심)’에서 경쟁하며, 장기적으로 콘텐츠 경쟁력 보유 시 점차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
- ▶ OBS 기존 광고주의 광고비 지출액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광고주 증가로 광고판매액은 기존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신규 광고주는 다른 방송사에 대한 광고지출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OBS광고를 구매하여 군소 PP들의 광고수익을 악화시킬 가능성

### < 검토 의견 >

- OBS의 서울 지역 역외재송신 시, 유료방송플랫폼 시장, 지상파방송 채널 재송신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방송프로그램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다만, 방송광고 시장에서는 지상파방송 3사 보다는 PP 광고수익을 잠식하여 취약 PP들의 기반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 PP의 전체 광고 수익('09년 7,548억원)에서 차지하는 예상 광고잠식 비중은 최대 3.5%(261억원) 정도로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OBS가 서울지역으로 역외재송신 되더라도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향후 계획 >

- '10. 2월 서울지역 SO(13개)에 대한 OBS 역외재송신 승인 의결 시의 결정에 따른 나머지 SO(14개)에 대한 OBS 역외재송신 허용 여부는
  -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과 관련한 방송시장 영향 평가 결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향후 서울지역 미승인 SO(14개)로부터 역외재송신 승인 신청이 있을시

- 방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심사(제3항)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제5항) 후 최종적으로 개별 SO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승인절차 : 사업자간 약정 → 승인신청(SO)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심사 → 의결

- 심사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함

#### ※방송법시행령 중 역외재송신 승인 관련 절차 및 심사 관련 규정

제61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및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 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기존 역외재송신 승인 요건('08.1월)에 대하여는 네트워크 체제, 외국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개선방안을 논의함

※ 기존 역외재송신 승인 요건(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 '08.1월)

- 신청주체는 수도권 지역 SO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신청대상은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방송으로 한정하되, 다른 지역방송과의 네트워크 협약 또는 총국 형태로 전국적인 방송망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방송은 대상에서 제외

##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 후보도시 관련

○ PP-14 개최 후보도시 선정 절차

- 4월 : 제안요청(RFP, Request For Proposal)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5월 : 심사위원회 구성(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인 포함 총 11인)
- 5월 : 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 ITU의 주요 심사항목 및 지자체의 행사 기여의지 등을 평가한 후, 상위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를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
- 5월 : ITU 사무총국에 개최 후보도시 통보
  - 우선순위 명시 없이 심사결과 상위 3개 지자체를 통보
  - ※ 전차회의 개최 후보도시 통보사례
    - '06년(터 키) : 2개 지자체(3개 컨벤션)를 ITU에 통보
    - '10년(멕시코) : 3개 지자체(3개 컨벤션)를 ITU에 통보

○ 심사위원회 구성 :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장(1인)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 심사회의를 주재하되, 심사(채점)에는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10인)
  - 정보통신 관련 산·학·연 임원, 대표(또는 부대표), 교수
  -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관련 기관의 전문가

- 간사(1인) :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관

※ 심사회의를 보좌하되, 심사(채점)에는 참여하지 않음

○ 심사항목 및 배점

부 문	심 사 항 목	배 점	
ITU 주요 심사항목	① 회의장 수 및 수용능력	15	70
	② 회의기간, 준비기간, 철거기간 동안 회의장 사용 가능 여부	15	
	③ 현 컨벤션 내·외부 시설 여건 / 보완 또는 대체방안 포함	5	
	④ 항공접근성 / 보완 또는 대체방안 포함	10	
	⑤ 시내 교통 편의성 / 보완 또는 대체방안 포함	5	
	⑥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다양성 / 보완 또는 대체방안 포함	15	
	⑦ 보안 및 안전	5	
지자체 기여의지 및 기존 경험	⑧ 지자체의 참여 및 행사 지원계획	15	20
	⑨ 국제회의 개최 경험, 지원 인력 확보 및 운영방안	5	
기 타	⑩ 문화·환경 여건 등 / 보완 또는 대체방안 포함	5	10
	⑪ 프레젠테이션 및 기타 특징점	5	
합 계		100	

※ ①, ②의 경우, ITU의 시설요건만 만족하면 만점(총 30점)을 부여